



캘리포니아주 권익보호 및 옹호 시스템

무료 전화: (800) 776-5746

## SB 946 (민간의료보험에서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2014년 11월 개정, Pub #F071.03

2012년 7월 1일 시행된 SB 946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서비스 계약과 의료보험 증권에서 자폐증 또는 전반적 발달장애 (PD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행동 건강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정보지는 이 법안이 자폐증 관련 행동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룹니다. 해당 법안 중 자폐증 치료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SB 946은 관리보건서비스부 (DMHC,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또는 보험부(DI, Department of Insurance)의 관할 하에 있는 의료보험에만 적용됩니다.<sup>1</sup>

---

<sup>1</sup> DMHC와 DI는 관할 대상인 의료보험의 목록을 관리합니다.  
<http://wps0.dmhc.ca.gov/hpsearch/viewLicensedHealthPlan.aspx> &  
[http://interactive.web.insurance.ca.gov/webuser/ncdw\\_alpha\\_co\\_line\\$.startup](http://interactive.web.insurance.ca.gov/webuser/ncdw_alpha_co_line$.startup)

이 법안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leginfo.ca.gov/pub/11-12/bill/sen/sb\\_0901-0950/sb\\_946\\_bill\\_20111009\\_chaptered.pdf](http://leginfo.ca.gov/pub/11-12/bill/sen/sb_0901-0950/sb_946_bill_20111009_chaptered.pdf)

##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특정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행동 서비스는 응용 행동 분석 (ABA, applied behavioral analysis) 과 기타 증거 기반 접근법을 포함한 전문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자폐증이나 PDD 가 있는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해당 치료는 면허가 있는 의사, 외과의 또는 심리학자가 처방해야 합니다.
- 해당 치료는 전문가 또는 유자격 제공자가 감독하는 준전문가를 포함하여 유자격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유자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아래 설명 참조)가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치료 플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측정가능한 목표
  - 적어도 6 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하는 검토 빈도 포함, 6 개월 단위의 검토
  - 치료대상인 행동건강 불능 기술 그리고
  - 서비스 유형, 시간, 환자 참여 필요
- 해당 치료는 증거 기반 프랙티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종료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해당 프로그램이 휴식, 데이 케어 또는 교육 서비스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sup>2</sup>

##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폐증 또는 PDD 를 진단 받은 사람들입니다.<sup>3</sup>

## 유자격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란 무엇입니까?

유자격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경험과 능력 내에서 PDD 또는 자폐증에 대한 치료를 설계, 감독 또는 제공하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sup>4</sup> 개인, 기관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또한 자체 경험과 개업 인가 내에서 PDD 또는 자폐증에 대한 치료를 설계, 감독 또는 제공하는 의사, 외과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교육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가, 언어치료 임상가, 청능사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포함됩니다.<sup>5</sup> 여기에는 행동 준전문가도 포함됩니다<sup>6</sup>. 준전문가는 공인 행동 분석가 또는 (Certified Behavioral Analyst) 행동 관리 컨설턴트 (Behavior Management Consultant) 의 감독 하에 행동 플랜을 실시합니다.<sup>7</sup>

---

<sup>2</sup> 보건 및 안전법 제 (Health & Safety Code) 1374.73(c), DMHC 관할 하의 보험 보험법 제 (Insurance Code) 10144.51(c), DI 관할 하의 보험

<sup>3</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2(d)(7); 보험법 제 10144.5(d)(7)

<sup>4</sup> 예를 들어, 행동 분석가 인증 협회 (Behavior Analyst Certification Board).

<sup>5</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3(c)(3); 보험법 제 10144.51(c)(3)

<sup>6</sup> 준전문가는 또한 행동 관리 테크니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sup>7</sup> 17 캘리포니아 법규집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Section 54342(b); 보험법 제 10144.51(c)(5)

## 이 법안의 대상인 의료보험 서비스 계약과 의료보험 증권은 무엇입니까?

입원, 의료 또는 수술 치료를 제공하며 DMHC 또는 DI가 관할하는 모든 의료보험은 <sup>8</sup>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안의 대상이 됩니다.

## 제외되는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이 법안은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sup>9</sup> 또한, 메디-칼 (Medi-Cal) 또는 건강가족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공무원 퇴직 연금 (PERS,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관리위원회를 통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sup>10</sup> 노조 또는 노사 혜택 플랜과 같은 자가 의료보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ERISA, Employee Retirement Security Act)가 주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주 의료보험 보장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논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sup>8</sup> 매니지드 케어 플랜 (HMO, Managed care plans) 또는 HMO는 DMHC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상(Indemnity)의료보험은 캘리포니아 보험부 (CDI,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의 관할입니다. 선호 제공자 기구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플랜은 보상 의료보험이므로 보통 CDI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Blue Cross와 Blue Shield PPO 플랜은 DMHC의 관할입니다.

<sup>9</sup> 단일 전문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 플랜들은 치과나 안과 건강보험과 같은 보험입니다. 보건 및 안전법 제 1345(o)

<sup>10</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3(d); 보험법 § 10144.51(d)

##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보험이 자가보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가보험에 PDD 또는 자폐증에 대한 행동 건강 치료를 제공하는지 물어봐야 합니까?**

해당 보험에 처음 가입하실 때 받은 보험대상증빙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책자에 “자가보험” 용어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사의 인사관리부 (HR, Human Resources) 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가보험이 보험사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자가보험인지 여부를 알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보험에서는 의료비용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스톱 로스 보장,” 즉 보장 인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가보험이 보장에 관해 주 의료보험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sup>11</sup> 많은 보험이 준수합니다. 만약 귀하의 보험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자가보험은 다른 의료보험에 비교할 만한 혜택을 갖게 됩니다. 보험에 PDD 또는 자폐증에 필요한 행동 건강 치료를 보장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또는 의료보험에 보장과 관련하여 어떻게 물어봐야 합니까?**

귀하의 주치의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 자폐증 전문의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귀하의 주치의 또는 전문의가 치료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료 그룹, 독립 의사

---

<sup>11</sup> 29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제 1144(a)

협회 (IPA, 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 또는 의료보험에서 치료 요청을 검토하고 보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거부는 다른 무엇보다 해당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실험적이거나 또는 보장 혜택이 아니라는 의료 그룹이나 의료보험의 결론을 토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보험사가 행동 건강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논의는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7201.pdf> 를 참조하십시오.

**저는 지역센터 가입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센터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귀하를 대신한 해당 주치의의 행동 건강 치료에 대한 요청 승인 여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승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귀하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 Individual Program Plan) 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가 행동 건강 치료에 대한 귀하의 필요 사항을 문서화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추가 정보 또는 확장 설명이나 추가 문서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귀하를 지원하도록 IPP 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랜터맨 법 (Lanterman Act) 에 의거 지역센터에서 정액본인부담금, 정률본인부담금 및/또는 공제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네, 2014년 6월 20일 현재, 만약 해당 서비스가 해당 아동의 IPP 또는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해당 서비스<sup>12</sup>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에 대한 다음 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역센터에서 보험 정액본인부담금, 정률본인부담금 또는 공제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 1) 해당 아동은 아동의 부모/보호자/간병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 또는 의료보험증권의 보장을 받습니다.
- 2) 해당 가족의 연간 총 소득은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하입니다.
- 3) 이 비용에 책임을 지는 제 3자는 없습니다.

성인 소비자의 경우, 만약 해당 서비스가 IPP 내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다음 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역센터에서 보험 정액본인부담금, 정률본인부담금 또는 공제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 1) 해당 소비자의 연간 총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 미만인 경우.
- 2) 이 비용에 책임을 지는 제 3자는 없습니다.<sup>13</sup>

## **우리 가족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를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해당 지역센터는 필요할 경우 해당 아동을 집에서 돌보아야 하고 다음 중 하나

---

<sup>12</sup> 복지 및 기관법 제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4659.1(a)

<sup>13</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1(b)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정률본인부담금 또는 공제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 1) 부모/보호자/간병인이 정액본인부담금 또는 정률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능력 또는 해당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경우,
- 2) 부모/보호자/간병인 또는 성인 소비자의 정액본인부담금 또는 정률본인부담금 납부 능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난적 손실(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이 발생한 경우,
- 3) 해당 아동 또는 지역센터 소비자인 다른 아동과 관련된 보상되지 않는 의료비가 상당한 경우.<sup>14</sup>

## 지역센터는 어떻게 내 연간 총 소득을 파악합니까?

가족 구성원은 W-2 근로소득자 세금명세서 (W-2 Wage Earner Statement), 급여 명세서, 주 소득 세금 신고서 또는 기타 소득 증빙서 사본을 지역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sup>15</sup> 소득의 변동으로 자격성에 변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sup>16</sup>

## 2014 년도 연방 빈곤 수준은?

---

<sup>14</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1(c)

<sup>15</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1(d)

<sup>16</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1(e)

가족 구성원 수	48 개 인접 주 및 D.C.	빈곤 수준의 400%
1	\$11,670	\$46,680
2	15,730	62,920
3	19,790	79,160
4	23,850	95,400
5	27,910	111,640
6	31,970	127,880
7	36,030	144,120
8	40,090	160,360

주: 1 명 추가 시 4,060 추가

**향후 연간 연방 빈곤 수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연방 빈곤 수준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aspe.hhs.gov/poverty/index.cfm>. 연방 빈곤 수준의 400%는 연방 빈곤 수준에 4 를 곱한 것입니다.

## 지역센터에서 랜터만 법에 의거 내 공제금액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네, 2014년 6월 20일 현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센터에서 공제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sup>17</sup>

## 지역센터가 SB 946 때문에 내 행동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은 귀하가 지역센터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sup>18</sup> 하지만, 만약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메디-칼 (Medi-Cal), 메디케어 (Medicare), 균일한 서비스를 위한 민간 보건 및 의료 프로그램 (CHAMPUS, 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 for Uniform Services 또는 TRICARE), 자택 간호 서비스 (IHSS, In-Home Support Services),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민간보험 또는 의료보험 서비스 플랜의 자격 대상이 되고,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해당 지역센터는 해당 서비스를 귀하를 위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sup>19</sup>

만약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지역센터에 메디-칼, 민간보험 또는 의료보험 서비스 플랜에서 행동 서비스를 거부했음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센터에서 향소의 이득이 없다고 결정하면, 지역센터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sup>20</sup> 만약

---

<sup>17</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1(a)

<sup>18</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3(a)(4)

<sup>19</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c)

<sup>20</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659(d)

해당 지역센터에서 귀하가 항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지역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아직 거부 결정을 받지 않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최종 행정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 경우 그리고 귀하가 청원하려 한다는 정보를 지역센터에 이미 제공한 경우, 또는 메디-칼, 민간보험 또는 의료보험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까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기관이나 민간 보험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지역센터에서 행동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지역센터가 일반 서비스 또는 귀하의 민간보험을 이용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센터는 IPP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변경에 관해 귀하와 합의하거나 서면 조치 통보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sup>21</sup> 이 통보서는 변경이 시작되기 30 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sup>22</sup> 이 통보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왜 해당 지역센터가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기본적 사실,
- 해당 조치의 사유,
- 효력 발생일, 그리고,

---

<sup>21</sup> 보통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결정은 IPP 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 4646.4(a)-(c). 하지만, 법에 의거 만약 지역센터가 귀하의 동의 없이 IPP 내의 서비스를 축소, 종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귀하에게 먼저 30 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 4710

<sup>22</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710

-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특정 법, 규정 또는 정책.<sup>23</sup>

귀하가 이미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해당 지역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정 심의회를 요청해야 합니다.<sup>24</sup> 그렇지 않으면, 해당 요청을 30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sup>25</sup> 만약 면제가 가능하고 귀하가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귀하의 공정 심의회 요청서에 "면제 요건 충족(I meet an exemption)"이라고 추가로 기술해야 합니다.

지역센터의 결정에 대해 청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저희 정보지인, 지역센터 적법 절차 및 심의회 요청 권리를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2601.pdf> 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정 법안은 조기 시작 프로그램(Early Start Program) 또는 지역 학군에서 내 행동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까?**

이 법안은 귀하가 조기 시작 프로그램 또는 지역 학군에서 받고 있는 어떠한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sup>26</sup> 귀하의 서비스에 대한 변경은 개별 가족 서비스 플랜 (IFSP,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귀하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귀하가

---

<sup>23</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701. 이 정보는 또한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sup>24</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715

<sup>25</sup> 복지 및 기관법 제 4710.5(a)

<sup>26</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3(a)(3) 및 (4)

적절한 시기에 감축이나 해지에 대해 청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계속(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의 권리와 책임 (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분쟁의 제 6 장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6.pdf>, 조기시작의 제 12 장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12.pdf>, 그리고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1601.pdf>

## **SB 946 으로 인해 자폐증이 있는 특수교육 학생이 학군으로부터 행동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까?**

SB 946 으로 인해 학군으로부터 행동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져서는 안되며 학군으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는 절차가 지연되어서도 안 됩니다.

SB 946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IEP 하의 서비스 제공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sup>27</sup>.”

비록 SB 946 에 의거하여 학생의 보험 보장에 행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자폐증이 있는 학생에 대해 행동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의무는 강력합니다. 연방 특별교육에서는 해당 학부모가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 학군이 학부모의 보험혜택을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sup>28</sup> 이러한 손실에는 평생보장의 감소 또는 다른 혜택의 상실, 보험료 증가 또는 보험계약 및

---

<sup>27</sup> 보건 및 안전법 제 1374.73(a)(4) 및 보험법 제 10144.51(a)(4), 각각

<sup>28</sup> *Seals v. Loftis* (E.D. Tenn, 1985) 614 F.Supp. 302; *Raymond S. v. Ramirez* (N.D. Iowa, 1996) 918 F.Supp. 1280.

본인부담금과 공제금액과 같은 비용 지출이 포함됩니다.<sup>29</sup>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는 학부모가 자기 보험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군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언급해왔습니다.<sup>30</sup> 그러나, 행동 서비스에 대한 보험 보장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군에서 보험보장에 대해 질문하고 부모가 민간보험의 사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기 보험의 사용으로 위에 기술한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녀의 IEP 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 지불 요청서 제출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의 지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자금 지원처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

<sup>29</sup> *Id.*

<sup>30</sup> *Simon*, 17 IDELR 225 (1990), *Conway*, 211 IDELR 438 (1987), *Spinner*, 18 IDELR 310 (1991).